

# 효율적 법학교육을 위한 법과대학 도서관의 제도화 방향\*

## Institutionalization of Academic Law Library for Efficient Legal Education

홍 명 자 (Myung-ja Hong)\*\*

〈 목 차 〉

- I. 서론
    - 1. 연구목적과 연구의 필요성
    -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 II. 법학교육과 법과대학 도서관
    - 1. 법학교육에 있어서 법과대학 도서관의 의의와 필요성
    - 2. 법과대학 도서관의 특성과 그 역할
  - III. 법과대학 도서관의 기본 요소와 도서관 봉사
    - 1. 도서관의 기본요소
    - 2. 도서관 봉사
  - IV. 요약 및 제언
- 참고문헌

### 초 록

본 연구에서는 우선 우리나라의 법학교육기관인 법과대학의 현실에 대해 이미 발표된 보고서를 중심으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법학교육을 개혁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강력하게 도입이 주장되고 있는 미국식 law school제도에 대해 조사하였다. 이 제도에서는 법과대학 도서관이 법학교육의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미국식 law school 제도가 도입될 경우 법학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법과대학 도서관이 맡아야 할 역할에 대해 검토하고, 이를 위해 도서관이 갖추어야 할 기본 요소와 도서관의 봉사에 관하여 조사하였다. 미국 법률전문직단체의 법과대학 도서관에 관한 기준 내지 규정과 미국의 우수한 법과대학 도서관의 실제 운영상황을 조사함으로써 우리나라에 이러한 제도가 도입될 때 하나의 지침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problems of legal education system in Korea; examined the basic elements and services required by ABA Standards and AALS Regulations and Bylaws; and surveyed the situation of 4 law school libraries in America in order to recommend the basic requirements for the establishment of a law school library if the American law school system is adopted.

\* 이 논문은 1999년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교비해외과건 연구 지원금에 의한 것임

\*\*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사회과학부 도서관학과 교수

## I. 서 론

### 1. 연구목적 및 연구의 필요성

세계 제2차 대전 이후, 특히 1960년대 이후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법과대학의 수가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분교를 포함하여 85개 대학에 법학과가 설치되어 있어 인구비례로 본다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준이라고 한다.<sup>1)</sup> 그러나 그 교육여건은 매우 열악하며, 특히 물적 시설에 있어서 법과대학 전용도서관을 갖춘 대학은 전국에 하나 밖에 없는 실정이다.<sup>2)</sup>

오늘 날 국민들의 법률서비스에 대한 관심은 점차 커지고 있으며, 특히 질적으로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받고자 하는 욕구가 증가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률서비스를 담당할 충분한 수의 법조인과 자질을 갖춘 법조인의 양성에 관하여 초점이 맞추어지고, 따라서 대통령 자문기관으로서 설치된 사법개혁추진위원회와 새교육공동체위원회에게 이 분야에 관한 연구가 과제로 부여되었다. 이 두 개의 위원회는 현행 법학교육 내지 법조인 양성 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밝히고 있다. 법학교육기관의 문제점과 관련하여 인적 물적 시설의 불충분, 특히 도서관환경의 열악성에 대해서 이 두 위원회가 모두 거론하고 있으면서도, 구체적으로 도서관이 법학교육에 있어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가, 그리고 무엇이 얼마나 미비하며 이 미비성이 법학교육의 효율적 운영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법학교육의 개선을 위한 향후 대책에 대해서 두 위원회가 각기 다른 내용의 연구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는데, 새교육공동체위원회는 “법학교육 제도개선 연구: ‘학사 후 법학교육’의 도입”이라는 보고서에 의하여, 법률이론과 법률실무교육을 일원화할 것과 미국의 law school 제도와 유사한 “법학대학원”을 설치하도록 권고하였다.

우리나라에서 법학은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니고 있고 또한 사회적으로도 매우 중시되어온 학문이지만, 법학의 교육과 연구를 위한 기본 시설인 도서관은 이러한 영향을 받지 못하고 있다. 학문적 특성으로 인하여 일반도서관이 법률분야에 대한 봉사를 충분히 할 수 없고 따라서 법률도서관의 특수성과 독립성이 인식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법률도서관에 대한 인식이 충분하지 못하여 제대로 태동조차 하지 못한 실정이라고 하겠다. 법학교육을 담당하는 법과대학에서 역시 마찬가지 상황이어서, 법과대학에서 도서관이 법학교육을 위한 필수적 지원시설이라는 점이 널리 인정되지 못하여 현재 극소수의 법과대학에만 도서관이 설립

1) 사법개혁추진위원회, 법조인 양성제도, 서울; 사법개혁추진위원회, 1999, p. 29.

2) 상계서, p. 30

된 실정이다.

법과대학에서 행정책임자인 학장, 교수진, 그리고 도서관장은 “삼발이 (tripod)”적 관계를 갖는 3요소라고 하겠다. 세 요소 중에서 하나라도 기울게 되면 넘어지게 되며, 따라서 법과대학이 발전하고 법학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려면 법률사서의 동반자적 역할과 가치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아무리 유능한 학장이 있고, 아무리 훌륭한 교수진이 있더라도 사서의 뒷받침이 없고 또한 도서관의 환경이 장서, 시설 등의 면에서 열악하다면 법학교육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

법학교육의 문제성이 널리 인식되고 따라서 새로운 형태의 법학교육제도 즉 미국식 law school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공감되고 있는 차제에, 법과대학에서 법학교육을 위한 “실험실”로 지칭되는 도서관에 대해서 보다 깊게 다루고자 이 논제를 채택하였다. 즉 법학교육에서 법과대학 도서관이 차지하는 위치에 대해 정확히 밝히고, 이러한 도서관이 효율적으로 법학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기본요소와 봉사에 대해 밝혀, 앞으로 마련되어야 할 도서관기준을 정하는데 참고로 삼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물론 미국이 속하고 있는 법체계, 미국의 법학교육제도, 법과대학의 현황 및 법학교육의 수준과 내용이 우리나라와는 현저하게 다르지만,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우수 법과대학의 도서관 현황을 조사하여 법률도서관 운영에 관한 실제적 정보를 입수함으로써 보다 바람직한 방향을 설정하는데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 2. 연구범위와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우선 제2장에서, 법학교육에서 법과대학 도서관이 차지하는 위치와 그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하고, 이어서 법과대학 도서관의 특성 및 그 역할 등에 대해 이론적 설명을 하였다. 그리고 제3장에서는 법학교육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하여 법과대학 도서관이 구비하여야 할 기본 요소 및 도서관에서 수행되어야 할 봉사에 대하여, 미국의 법률전문직단체에서 만든 지침을 기초로 하여 설명하고, 아울러 미국의 우수 법과대학 도서관이 이러한 지침을 어느 정도 만족시키고 있는가를 밝히기 위해 이들 도서관의 운영 현황에 대해서도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제4장에서는 본문에서 서술한 내용에 대해 요약을 하고, 현재 우리나라의 법학교육계의 도서관환경을 개선하고 미래의 법학교육계의 바람직한 도서관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 제언을 하였다.

법과대학 도서관에 관한 기준은 많은 나라에 의하여 만들어져 있지만,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교육개혁의 방향으로 도입이 주장되고 있는 미국 법과대학 도서관의 기준과 규정 등을 중심으로 하여 살펴보았다. 그밖에 관련문헌을 조사하여 법과대학 도서관제도와 운영에 관

하여 참고하였으며, 또한 미국의 우수 법과대학 도서관을 방문하여 도서관장과의 면담 및 실 제조사, 웹사이트의 조사 그리고 ABA (American Bar Association)에 제출된 자료인 Annual Questionnaire에 의하여 도서관의 기본요소와 그 봉사 현황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방문 조사한 대학은 U. S. News and World Report에 의하여 실시된 법과대학의 평가에서 종합순위와 도서관 순위에서 우수대학으로 평가된 대학으로 미국 동부에 소재한 4개 법과대학 도서관 (Yale Law School의 Lillian Goldman Library, Harvard Law School Library, New York University (NYU로 약칭), School of Law Library, Columbia의 법과대학의 Arthur W. Diamond Law Library)을 그 대상으로 하였다.

## II. 법학교육과 법과대학 도서관

### 1. 법학교육에 있어서 법과대학 도서관의 의의와 필요성

원래 법과대학에서 이루어지는 법학교육은 법률에 관한 기본 개념을 익히게 하고, 법률제도에 관한 지식을 습득시키며, 중요 법률분야의 기본원리를 터득하게 하고, 아울러 기본적으로 법리적 사고를 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그러므로 학생들이 법의 기본개념에 대해 잘 이해하고 주어진 법률문제를 연구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교육할 뿐 아니라, 졸업 후에도 법과대학에서 받은 교육을 바탕으로 하여 사회의 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새로운 법률문제에 대해서도 잘 적응하도록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법학교육의 목표는 미국 법과대학에서 일찍부터 정립되어, Judge Holmes는 법과대학의 교육이 단순히 사실을 습득하도록 가르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사실이 생동할 수 있도록 가르쳐 훌륭한 법률가를 배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 법과대학은 “전문가를 위한 작업장 및 훈련장 (workshop and nursery of specialist)”이 되어야 한다고 피력한 바 있다.<sup>3)</sup>

그런데, 법을 둘러싼 환경은 계속 변화하므로 법학교육 역시 이러한 변화에 부응하여 변화해야 한다. 1974년 American Bar Foundation의 보고서에서, “법과대학의 환경은 법학교육의 수행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미래에 전문직으로서 활동할 법률가의 능력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오늘 날 법학교육에 나타나는 변화로서 컴퓨터를 활용한 교육과 임상교육의

3) “The Harvard Law School”, Law Quarterly Review, Vol. 3 (1887), p. 118.

4) R. Giblin, “Changes and Challenges: Law School, the New Legal Education and the Law Library”, Law Library Journal, Vol. 73, No. 3 (Summer, 1980), p. 694.

증대, 학제간 교과과목의 확대, 주제별 잡지 및 모의재판의 강화 등이 예시되고, 법률 실무 계의 변화로서는 신기술의 활용, 전문화, 새로운 경영기법의 도입 등이 열거되고 있다.<sup>5)</sup>

이와 같이 환경의 변화에 부응하면서 현실 사회에서 나타나는 법률문제 뿐 아니라 미래에 나타날 수 있는 법률문제에 대해서 까지 효율적으로 대처하려면 법률정보를 폭 넓게 소장하고 있는 법률도서관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법률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학연구를 제대로 하려면 도서관 및 도서관자료의 이용에 관한 기술이 매우 필요하다. 이러한 기술은 법과대학 재학 중에 주어진 교과과목을 성공적으로 이수하기 위하여 필요할 뿐 아니라, 졸업 후에 법률가로서 업무를 수행할 때에도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기술은 전문직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가의 성패 여부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ABA Task Force on Law Schools and the Professions가 발행한 Statement of Fundamental Lawyering Skills and Professional Values에서, ABA는 법학연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률가는 법학연구에 필요한 기본도구에 관한 지식과 그 활용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제시한 바 있다.<sup>6)</sup> 따라서 법과대학에서 실시되는 시험에 있어서도 학생들의 암기력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법률문제에 봉착했을 때 법률가로서 어떻게 대처하여 해결할 것인가에 치중하여 실시하므로,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학생들은 자료를 다룰 줄 아는 능력을 함양해야 한다. 많은 경우에 교수들은 시험 전에 모의시험문제를 home page에 예시하여 (주로 구체적인 사례) 줌으로써 학생들이 도서관에 소장된 각종 자료를 활용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고, 실제 시험 역시 이와 유사한 문제를 출제함으로써 학생들의 자료이용에 관한 능력 정도를 시험하게 된다.

“법률도서관이 없으면 법률제도가 운용될 수가 없다”고 피력하듯이,<sup>7)</sup> 법률분야에 있어서 법률도서관의 중요성은 널리 인식되어 왔다. 이와 같이 법률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하여 반드시 법률도서관의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판례법을 기초로 하는 영미법 체계 하에서만 타당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성문법을 주축으로 하는 대륙법체계 하에서도 마찬가지로 타당성을 지닌다.

법과대학이 법학교육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려면 법과대학에 법률도서관이 필수적으로 설치되어 중추적 역할을 하여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미 오래 전부터 주장되어왔다. 즉 19세기 초 Harvard 법과대학이 개교할 때부터 인식되어, 1817년 7월 12일자로 간행된 Boston Adviser에서는 법과대학의 개교를 알림과 함께 학생들에게 “완전한 법률도서관 (a complete

5) Martha, J. Dragich, "Organizational Structure in Law Libraries: a Critique and Models for Change", Vol. 81, No. 1(Winter,1989), p. 71.

6) Mary A. Hotchkiss, "The Role of Law Librarians in Legal Education and the Legal Profession", Profile, No. 2 (Winter 1992), p. 9

7) Robert G. Desiderio, "The Law School Library; its Function, Structure, and Management", *Special Libraries*, October 1982, p. 292

law library)"을 두겠다고 약속하는 기사가 나왔다.<sup>8)</sup> 이어서 1829년에는 동 대학에 강의의 위해 방문했던 Joseph Story가 당시의 총장에게 "학습이나 참고를 하기 위한 도구들을完비한 충분한 법률도서관에 학생들이 항상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도서관의 중요성을 피력하였다.<sup>9)</sup>

그 후 법학교육계의 대표적 학자로서 Harvard 법과대학의 학장을 역임한 Langdell은 법학교육의 방법으로서 사례연구방법을 도입하면서, 학문으로서의 법학은 충분한 여건을 갖춘 대학에서만 이를 교육할 수 있으며, 그 교육여건 중에서 도서관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법률도서관이 "교과과정을 위한 중추" 및 "법학교육을 위한 정보원이며 또한 법학과 관련된 기본적인 정보원"이라고 규정하고, 나아가서는 도서관을 "실험실" 및 "교수와 학생들을 위한 작업장"으로 규정한 후 도서관에 대해 지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sup>10)</sup>

법과대학이 부여된 과제를 제대로 수행하려면 법과대학의 행정책임자인 학장, 교수, 및 도서관장이 법률가의 양성이라는 공동 목표의 달성을 위해 함께 활동하여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서로 균형 있게 발전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sup>11)</sup> 다시 말하면 법률도서관에서 수행되는 사서의 활동과 법과대학의 교육적 사명과의 사이에 "의미 있는 통합"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통합을 위해서는 법과대학 구성원들이 도서관 내지 사서의 역할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또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야만 한다.<sup>12)</sup> 또한 사서들 역시 도서관의 역할이 법학교육과 어떻게 조화되며, 그들의 업무수행 및 이용자와의 접촉이 교육목표의 달성여부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충분히 알아야 한다.<sup>13)</sup>

Bade는, Harvard 법과대학이 가장 대표적 법과대학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법률도서관의 중요성 및 훌륭한 도서관을 위한 능력 있는 사서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깨달았던 두 명의 학장이 있었기 때문이며, 법과대학의 교수단에서 학장 다음으로 중요한 구성원은 도서관장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어서 그는 법률도서관 발전의 최대의 걸림돌은 도서관이 법학교육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에 대한 학장과 교수단의 무지라고 주장하고 있다.<sup>14)</sup>

그러나 미국의 법과대학에서도 사서들이 그들의 위치를 확립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러한 문제들은 사서 자신이 그들의 존재의의, 기능과 역할 등 정체성에 대해 확고한 신

8) Arthur C. Pulling, "The Harvard Law School Library, Law Library Journal, Vol. 43, No. 1 (February 1950), p. 1.

9) 상계서, p. 2

10) "The Harvard Law School", p. 124.

11) Giblin, 전계서, p. 693.

12) Michael J. Slinger, "Opening a Window of Opportunity: the Library Staff as a Meaningful and Integrated Part of the Law School community", Law Library Journal, Vol. 83, No. 4 (Fall 1991), p. 687.

13) 상계서, p. 698.

14) E. S. Bade, "Quo Vadimus ?", Journal of Legal Education, Vol. 2 (1949), p. 50-51.

념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났을 뿐 아니라, 사서들을 그들과 같은 계층으로 인정하면 그들의 사회적 위치가 훼손된다고 생각한 법학교수들의 엘리트의식에 의해서도 나타났다.<sup>15)</sup>

## 2. 법과대학 도서관의 특성과 그 역할

법과대학의 도서관은 법학교육과 법학연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다시 말하면, 교수들은 학생들에게 제공할 자료들을 도서관에서 입수할 뿐 아니라, 또한 사회의 변화하는 요구에 대응하고 새로운 법적 해결방안을 제시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도서관에서 얻을 수 있다. 그리고 학생들은 학습을 하고 과제로 부여된 자료를 읽으며, 시험준비 내지 부과된 법률문제와 가상적 사례를 해결하며, 강의의 보충을 위해 도서관을 이용한다. 이들이 도서관을 이용할 때 다양한 기록자료들을 동시에 이용해야 하고, 또한 이러한 자료들은 그 일부분만이 이용되더라도 모두 없어서는 안 될 자료들이므로,<sup>16)</sup> 법률도서관은 참고 도서관으로서의 성질을 지닌다.

그런데 법률자료는 법학에 관한 기본지식이 없이는 이해하기 곤란하며, 따라서 이러한 자료의 관리에 있어서 일반 도서관과는 달리 복잡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된다. 또한 법률도서관의 이용자도 법률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정보요구를 지니고 있으므로 이들의 요구를 이해하고 상응한 봉사를 하기 위해서도 고도의 전문지식이 요구된다.

상술한 바와 같이 법과대학은 참고도서관으로서, 그리고 법학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실험실과 같은 기관으로서 교수의 교육과 학생의 학습에 도움을 줄 뿐 아니라, 또한 교수와 학생의 연구활동을 지원해준다. 뿐만 아니라 그 외의 법률가나 일반인에게도 봉사를 하게 된다.

### (1) 강의실 교육과 임상교육을 보충하는 역할

법학교육과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일차적 목표를 지니고 있는 법과대학 도서관은 우선 교육적 측면에서 강의실 교육과 임상교육을 보충하는 기능을 하므로, 따라서 도서관은 이러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와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2) 연구에 필요한 정보지원을 하는 역할

도서관은 이용자들의 연구에 필요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입수하여 제공해주어야 한다. 특히 이용자의 관심범위가 확대되고 연구영역도 넓어지고 있으며, 또한 학제간 연구도 활발하게 전

15) Slinger, 전제서, p. 690.

16) Morris L. Cohen, How to find the Law, 7th ed., West Publishing Co., 1976,, p. 1-2

개되는 현실에서 도서관은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과대학에서의 연구활동은 교수나 연구자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급 학생들에 의해서도 이루어진다. 학생들은 그 법과대학에서 출판되는 법학잡지에의 기고, 모의재판(moot court)에의 참가, 졸업논문의 준비 등을 요구받고 있으므로, 그들 역시 연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할 것이므로 이들에게 정보지원을 해야 한다.

### (3) 지역 내 법률정보 자료실로서의 역할

법과대학 도서관의 일차적 봉사대상자는 그 도서관이 소속하고 있는 법과대학의 교수와 학생이다. 그러나 법과대학 구성원 이외의 사람들도 법률정보를 얻기 위하여 법과대학 도서관을 찾으므로, 이들에 대해서도 봉사해야 할 임무가 주어지고 있다. 법률관련 기관 중에 법과대학의 도서관만큼 충분한 자료와 설비를 갖춘 경우는 많지 않고, 따라서 이들 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법률가들이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법과대학 도서관에 의존해야 할 경우가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미국의 많은 주에서 법과대학 도서관을 “기본적 법률도서관” 또는 “지역자료실”로 규정하며,<sup>17)</sup> 많은 법과대학 도서관들이 일반인들의 도서관 이용요구에 대해 이를 허용하고 있다.

## III. 법과대학 도서관의 기본요소와 봉사내용

미국에서는, 정의로운 사회와 민주사회의 구현을 위하여 훌륭한 법률전문가의 양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에 대해 널리 공감되고 있다. 오래 전부터 법률가의 양성에 대한 책임이 법과대학에 있다는 점을 인식한 법률전문직 단체들은 법률가들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법과대학에서 내실 있는 법학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기준을 설정하였다. 가장 대표적 단체인 ABA와 AALS가 기준, 또는 규정과 세칙의 형태로 이를 마련하여 법과대학이 이를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또한 법과대학 인증의 기초자료로 사용하고 있다.<sup>18)</sup>

ABA는 1878년 설립된 이래 지속적으로 법학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관심을 가졌고, 따라서 1921년 법학교육을 위한 최소기준을 채택하였으며 이러한 기준에 맞는 법과대학 일람표를 공표 하도록 하는 정책을 수립함으로써 1952년에는 드디어 교육성에 의하여 범국가적인

17) Desiderio, 전제서, p. 293.

18) David Badertscher, "Standards for Law Libraries and Law Library Service", Bookmark, Vol. 48 (Summer 1990), p. 285.



법과대학 인증기관으로 인정되었다. 이와 같이 ABA는 “법과대학이란 법률전문직으로 되기 위한 관문(The law schools are gateway to the legal profession.)”이라는 기본정신 아래, 법학교육에 필요한 충분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기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저기준을 마련하여 법과대학의 인증을 위한 평가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인증된 법과대학은 충분한 교육환경 하에서 개설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에 의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피교육자들이 그들의 윤리적 책임을 인식하면서 법률전문직으로서 활동하는데 필요한 법학연구 기술 및 기타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였다는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된다.<sup>19)</sup>

그런데 요즘 ABA에 의해 마련된 기준이 법과대학의 인증을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되는데 대하여 대학의 총장, 정부기관 등의 반대가 있고, 또한 ABA를 상대로 하여 그 기준의 부적합성에 관하여 소송이 제기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판결에서 “ABA 기준의 준수가 법학교육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점에 대해 법학교육자 및 규제기관들 사이에 널리 공인되어 있다”고<sup>20)</sup> 밝히면서 패소를 결정하였다.

도서관기준이란 도서관 봉사 및 프로그램이 측정되고 평가될 수 있는 근거로서, 전문직 단체와 인증기관 또는 정부기관에 의하여 만들어지며, 이 기준은 최저수준 혹은 이상적 수준을 규정하거나, 전형적 절차 또는 질적 양적 평가를 위한 수준을 정하는 것이라고 정의되고 있다.<sup>21)</sup> 법률도서관 기준은 이보다 구체적으로 “다양한 전문적 요구 특히 교육과 연구에 관한 요구에 부합할 수 있도록, 도서관이 갖추어야 할 기본 요소인 직원과 봉사 및 시설 등에 관해 최저의 양적, 질적 수준을 기술한 것으로서, 강제적 혹은 임의적 준수를 위하여 전문직 단체에 의하여 만들어진 공식 문서”라고 정의되고 있다.<sup>22)</sup> 이러한 기준은 직원에 대한 인사 정책을 합리적으로 수행하고, 도서관시설과 장서의 보존과 효율적 이용을 보장하며, 또한 도서관 봉사의 극대화를 초래할 수 있도록 도서관의 예산과 재정자원을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sup>23)</sup>

미국의 법률전문직단체인 ABA와 AALS는 법학교육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도서관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일찍부터 인식하여, 법과대학기준 중에 도서관에 관한 기준을 포함시킴으로써 도서관의 각종 시설 및 장서의 발전에 커다란 도움을 주고 있다. 그리고 이들 기관들은 법과대학에 대해 주기적으로 평가를 하며, 그 일환으로서 도서관에 대해 평가한다. 물론 이들 기관은 도서관의 질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주로 양적 규모 즉 장서의 규모, 시설 및 장비의 수와 규모, 직원의 수와 자격 등에 관하여 최저기준을 규정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평가를

19) ABA, The American Bar Association's Role in the Law School Accreditation Process, Introduction, 1997

20) Judith W. Wegner, "Legal Education in the Future" in The National Conference on Legal Information Issues (ed. by T. L. Coggins, Fred B. Rothman & Co., 1996. p. 251.

21) ALA, "Standards", ALA Glossary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1983. p. 215.

22) Badertscher, 전제서, p. 282

23) Morris L. Cohen, "Tradition and Change in Law Library Goals", Law Library Journal, Vol. 75 (1982), p. 197.

한다.

1900년 초부터 AALS는 회원대학들이 법학교육을 위하여 도서관을 설립하여야 할 필요성에 대하여 인식하고, 도서관에는 최소한의 기본장서를 구비하여야 하며 또한 도서관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sup>24)</sup> 그리고 1912년에는 도서관장서의 양적 기준 (최소 5000권)을 명시하였으며, 그 후 1924년에는 위의 양적 기준 외에, 자료의 선택, 보관, 및 조직화에 관한 규정을 기준에 포함하였다.<sup>25)</sup> 1938년에 다시 개정하여 “회원도서관은 자격 있는 사서 (qualified librarian)를 반드시 두어야 하며 그의 기본적인 활동은 효과적인 봉사를 유지, 발전시키기 위하여 전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sup>26)</sup>

인증된 법과대학들은 적절한 도서관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도서관에 관한 기준을 1924년에 처음 언급했던 ABA는, 1940년대에서 1960년대에 이르기까지 그 기준에 대해 주기적으로 개정하였고 이때 법률사서들이 개정위원회의 위원으로 참가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리고 1970년에는 그 기준 가운데 도서관에 관한 항목을 신설한 후, 다음의 사항 즉 장서의 양과 질 그리고 그 범위, 물리적 시설의 적합성, 목록제도, 도서관 운영, 대학 내의 다른 도서관시설, 기본자료의 목록 및 자료의 종류, microfilm, 법률도서관이 법과 대학에 의해 운영되어야 한다는 점 등에 관하여 폭넓게 규정하였다. 그리고 법률도서관장, 법과대학 학장 및 교수로 구성된 법률도서관위원회 (Law Libraries Committee)를 ABA에 설치하여, 법률도서관에 관한 기준과 법률도서관에 관한 연차적 설문조사 및 현지조사를 위한 설문 등에 대해 주기적으로 심의하도록 하였다.<sup>27)</sup>

ABA 와 AALS 외에, AALL (American Association of Law Libraries) 역시 법과대학 도서관 기준의 설정에 깊이 관여하여 왔다. 즉 1906년에 창립된 이후, 법률도서관의 역할 내지 법률사서의 임무로서 교육적 기능을 강조하여 왔던 AALL는 독자적으로 법과대학 도서관의 기준을 만들지는 않았으나, 이들 전문직단체와 제휴하여 도서관기준의 설정을 위한 합동위원회 (Joint Committee on Cooperation between AALS and AALL)를 구성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 1970년에는 독립된 위원회의 하나로서 AALL에 기준위원회 (Standard Committee)를 설치하였고, 1971년에는 Miami에서 개최된 연차총회에서 각종 도서관의 도서관 기준 (Library standards for various types of libraries)에 관한 공개토론회도 가졌다.<sup>28)</sup> 그리고 법률도서관에서 일할 사서가 구비해야 할 기본지식 (일반지식과 전문지식)을 시한 “AALL Guidelines for Graduate Programs in Law Librarianship”

24) Bade, 전게서, p. 41.

25) Badertscher, 전게서, p.281.

26) 상게서, p. 283

27) 상게서, p. 282-283

28) 상게서, pp. 283-285.

을 1988년에 발표한 바 있다.

현재, AALS의 기준으로서는 Bylaws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Law Schools와 Executive Committee Regulations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Law Schools이 있고, AALS Executive Committee Regulations의 제 8장, 그리고 AALS Bylaws의 Section 6-10에서 법률도서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ABA 기준으로서는 Standards for Approval of Law Schools of the American Bar Association가 현재 적용중이며, 제 6장에서 법률도서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 1. 법과대학 도서관의 기본요소

법과대학 도서관은 그 모체기관인 법과대학이 법학교육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없어서는 안될 필수적인 기관이다. 법률도서관학 분야의 대표적 학자 중의 하나인 Cohen은 법률도서관의 목표로서, 이용자에 대한 충분한 봉사, 요구에 적합한 각종자료의 소장 및 소장자료에 대한 기록의 유지, 법학의 발전에 대한 기여, 그리고 도서관과 직원의 관리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의 운영 등을 예시하고 있다.<sup>29)</sup> 이와 같이 법률도서관은 다만 명목적으로 도서관을 설치하는 것에 의의를 두는 것이 아니라 설립목표를 충분히 달성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법과대학 도서관은 법학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어진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서관이 갖추어야 할 제반 요소 즉 필요한 인적 요소와 물적 요소를 충분히 구비한 후, 도서관이 담당하여야 할 봉사를 능동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 1) 법과대학 도서관의 설치와 운영

법과대학에서 법학교육이 실시되기 시작한 초창기부터 도서관은 그 교육의 중심이며 필수적인 시설로서 인정되어 왔다. 이와 같은 정신은 오늘 날 까지 그대로 전승되어 도서관은 법과대학의 필수적 시설로 인식되고 있으며, 따라서 모든 법과대학은 법학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반드시 법률도서관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ABA 기준 제601조의 a는, 법과대학의 교육활동을 실효성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법률도서관을 유지해야 한다고 규정하며, 교육, 연구, 봉사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도서관은 교수단, 학생 및 행정가들과 직접적이며 지속적인 관계를 가져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AALS Bylaws 제 6조의10 a는, 회원 대학은 학생과 교수의 교수 및 연구활동을 지원하고 장려하는데 적합한 도서관을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조 b는 도서관을 “법과대학의

29) Cohen (1982), 전계서, pp.195-197.

필수적 요소 (integral part of the law school)"로 밝히고 있으며, AALS Regulations 제8조의 1 항 역시 도서관을 법과대학의 필수적인 요소라고 규정하고 있다.

ABA 기준 제602조 b는 도서관 정책을 수립할 때 학장과 도서관장이 교수단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도서관봉사 및 장서개발에 대하여는 학장과 도서관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AALS Regulations 제8조의 6는 도서관장과 교수단이 함께 참여하여 성문화된 도서관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계속적으로 검토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미국의 법과대학들은 이러한 규정에 따라 도서관을 두고 있다. 그리고 도서관 정책을 심의하고 결정하기 위하여 도서관위원회를 두고 있다. 이 위원회는 도서관장과 교수들로 구성되거나 (Yale, NYU의 법과대학), 또는 도서관장과 교수 및 학생 대표들로 구성되며 (Harvard 법과대학), Computer and Library Committee라는 명칭의 위원회를 두기도 한다 (Columbia 법과대학). 그리고 도서관봉사 및 장서개발을 위하여 Executive Committee (Yale 법과대학), Selection Committee (Harvard 법과대학) 등을 설치하고 있다.

AALS는 도서관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성문화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Law Library Access Policy (NYU 법과대학), A Mission Statement of the Columbia University Law School Library (Columbia 법과대학) 등 소수의 자료가 마련되어 있을 뿐이다.

## 2) 도서관의 조직과 재정 및 인사

법과대학의 도서관은 법학교육과 연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된 도서관이므로, 따라서 이러한 목적을 보다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자치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기본정신으로 하고 있다.

법과대학 도서관의 조직과 운영, 그리고 재정과 관련하여 오랫동안 논의되어 온 주제는 통합 제를 채택할 것인가 혹은 자치제를 채택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었다. 자치제 (Autonomous law library 혹은 autonomy)란 법률도서관이 법과대학의 한 단위로 운영되는 체제로서, 이 체제에서는 법률도서관의 예산과 직원인사 등이 법과대학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반면에, 통합제 (Integrated law library 혹은 integration)란 법률도서관이 중앙도서관의 한 단위로 운영되는 체제로서, 이 체제에서는 법률도서관의 예산과 직원인사 등이 중앙도서관에 의하여 이루어진다.<sup>30)</sup> 자치제와 통합 제에 관하여 심각하게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1950년대인데, ABA는 1959년에 공식적으로 자치제를 인정하였고, AALS 역시 1936년에 법률도서관이 일반도서관으로부터 행정적으로 독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sup>31)</sup>

30) J. L. Mullins, A Selected Factors Affecting Growth Rates in American Law School Libraries, 1932-1976, Ph.D Dissertation, Indiana University, School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1984, p. 5.

31) 상계서, pp. 10-13.

이러한 기본입장은 오늘날에도 그대로 지속되어 규정에 명시되어 있다. 즉 ABA Standards 는 제 602조 a에서, 법률도서관의 발전을 주도하고 도서관자료의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서 법과대학이 행정적으로 자치권을 지닌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AALS Bylaws 제 6-10, b 역시 높은 수준의 봉사를 위해서 법률도서관이 자치권을 지닌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법률도서관의 자치권이 곧 각종 법학교육 프로그램에 적합한 높은 수준의 봉사를 보장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라는 점을 반영한 것이라고 하겠다.<sup>32)</sup>

법과대학 도서관은 법학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부여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조직되어야 하는데, ABA 기준은 도서관의 조직에 대하여는 명시하지 않고 있다. 반면에 AALS Regulation 제8조의 2, c와 제8조의 3은 도서관직원이 제대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용자가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직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AALS Bylaws 제 6조의 10, b에서는 교육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 운영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각 법과대학은 그 대학의 사정에 따라 법과대학 도서관을 다양한 방법으로 조직하고 있다. Yale 법과대학 도서관은 4개 부서 즉 행정 봉사부, 이용자 봉사부, 기술 봉사부, 외국법 및 국제법 봉사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용자 봉사부는 다시 열람 과와 참고과로 나뉘고, 기술 봉사부는 수서 과, 편목 과 등으로 다시 세분된다.

Harvard 법과대학의 경우에는 법과대학 학장 밑에 법률도서관장이 있으며 그 밑에 연구 봉사부 (Research Services Division)와 장서 봉사부 (Collection Services Division) 및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Administration)를 두고 있다. 연구 봉사부에는 담당별로 참고봉사, 특수장서, 접근봉사, 국제적 법학연구에 대한 참고봉사 등으로 세분되고, 장서 봉사부에는 영미법 담당 서지가와 서유럽 및 국제법 담당 서지가가 별도로 있으며, 그밖에 수서, 연속간행물, 편목, 보관, 장서관리 등을 담당하는 하위 부서가 있다.

NYU 법과대학도 Harvard 법과대학과 거의 비슷한 조직형태를 취하고 있다. 다만 다른 점은 도서관장 밑에 장서 봉사부 (Collection Services Division)와 연구 및 online 봉사부 (Research and Online Services Division) 등의 부서 외에 기술 봉사부 (Technical Services Division)와 기술부 (Technology Division) 등의 부서가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하부조직으로서, 장서 봉사부에는 장서관리, 장서개발, 미디어 봉사 등의 하위 부서가 있고, 기술 봉사부에는 연속간행물, 편목, 수서 등을 담당하는 하위 부서가 있다. 그리고 연구 및 online 봉사부에는 교수에 대한 봉사, 외국법과 국제법에 관한 봉사, Online 봉사 등을 담당하는 하위조직이 있다.

32) Guy Tanguay, "The Case for the Special Status of the University Library", Law Library Journal, Vol. 66 (1973), p. 25.

Columbia 법과대학 도서관에는 도서관장 밑에 부 관장이 있고 부 관장 밑에 이용자 봉사부, 특수 장서부, Law firm 봉사부 등이 있다. 이와 별도로 도서관장 밑에 기술 봉사과와 행정과가 있는데, 전자에는 하위 부서로 편목, 수서, 연속간행물 등을 담당하는 하위 조직이 있으며, 이와 별도로 컴퓨터 전문가가 Systems Coordinator로 활동한다.

이들 도서관들은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상술한 바와 같이 조직되어 있으며, 도서관의 기능을 보다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직원 개인별로 작성된 직무 기술표에 의하여 각각 담당하고 있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법과대학 도서관은 자치제에 의하여 운영되어야 하므로, 도서관 예산의 배정 및 집행 등 재정 면에서 법과대학의 영향을 받게 된다. ABA 기준 제 601조의 b는 법과대학의 교육, 연구, 봉사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서관이 충분한 재원을 확보해야 하고, 도서관 예산은 법과대학 예산의 일부로 배정 받으며, 또한 법과대학 예산과 동일한 방법으로 운영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AALS Bylaws는 제 6조의 10, b에서 법과대학 도서관이 예산에 대해 자치권을 지니고 있다고 명백히 밝히고 있다.

조사대상 도서관들은 모두 법과대학에서 그 예산을 배정 받고 있다. 배정 비율은 법과대학 전체 예산의 17.6% (Columbia 법과대학 도서관)로 부터 11% (Yale 법과대학 도서관), 10% (Harvard 법과대학 도서관과 NYU 법과대학 도서관)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연간 자료 구입비 역시 300만 불 (Harvard 법과대학 도서관)부터 160만 불 (Yale 법과대학 도서관), 150만 불 (Columbia 법과대학 도서관), 140만 불 (NYU 법과대학 도서관) 등으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들 도서관들은 배정된 예산을 운영함에 있어서 자율적으로 하지만, 집행 후에는 법과대학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다.

오늘날에는 자료 비의 증가, 훌륭한 자질을 갖춘 직원 기용의 필요성, 각종 정보기술장비 도입의 필요성, 및 도서관 공간확보의 필요성 등에 따라 도서관 예산은 계속 증액이 필요하나,<sup>33)</sup> 법과대학에 의한 적극적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재정사정이 어려운 시대에 자금조달을 하는 방안의 하나로서 도서관의 이용 및 봉사에 대해 유료 화하여 도서관으로 하여금 수입원을 확보하도록 많은 압력이 나타나게 되고, 또한 이에 관한 적극적 홍보활동이 요구되고 있다.<sup>34)</sup>

ABA 기준 제 602조의 c는 도서관장과 학장이 직원의 선발 및 유지에 관한 책임을 지니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인사 면에서의 자치제 채택을 명시하고 있고, AALS Bylaw 제 6조의 10, b도 역시 인사에 있어서 법률도서관이 자치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법과대학에서는 직원인사에 관해 중앙도서관의 Library Human Resources부서와 연결하여 처

33) Desiderio, 전계서, p. 295

34) Penny A. Hazelton, "Law Libraries as Special Libraries: an Educational Model", Library Trends, Vol. 42, No. 2 (Fall 1993). p. 331.

리하는 경우가 많고 (Yale, NYU, Columbia의 법과대학 도서관), 다만 Harvard 법과대학 도서관만이 도서관 직원의 인사에 있어서 법과대학의 인사과와 협의하여 처리하고 있다.

### 3) 도서관건물 및 좌석

법과대학의 도서관은 단순히 자료를 보관하고 이용시키는 시설로서 그 가치가 있기보다는, 전문적인 바와 같이 법학교육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실험실로서 활동할 때에 그 존재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도서관은 이용자들이 충분한 공간에서 편리하게 법률문제에 관한 해결방안을 연구할 수 있도록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법률도서관이 법학에 관한 다양한 형태의 자료를 포괄적으로 소장하고 이용자들이 필요로 하는 법률자료를 충분히 그리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방대한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법과대학 도서관은 일반적으로 법과대학 구내에 설치되어야 한다고 주장되고 있다. 그 이유로, 법률연구에 있어서 도서관의 중요성, 법률장서의 참고장서로서의 성질, 법률자료의 포괄성과 다양성, 다양한 자료를 동시에 이용해야 할 필요성, 학생과 교수 등 동질성을 지닌 이용자집단에 의한 활용, 자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다수 전문 직원의 필요성 등이 열거되고 있다.<sup>35)</sup>

법과대학 도서관은 이용자의 이용목적 및 이용 행태 면에서 일반도서관의 이용과는 차이가 있다. 법과대학의 학생이나 교수들은 주로 도서관에서 법률연구를 하며, 이 때 도서관을 참고도서관으로서 이용하므로 이용자들이 필요한 작업을 보다 자유롭게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도서관에는 충분한 좌석이 확보되어야 하며, 법학연구의 특성, 즉 특정 법률사안에 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다양한 자료들을 참고하여 다각도로 조사해야 하므로, 이용자가 다양한 자료들에 직접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좌석이 골고루 분포되어 설치되어야 한다.

ABA 기준은 제 702조에서 도서관이 법과대학의 프로그램, 교수와 학생의 수, 및 도서관 봉사 등을 고려하여 도서관의 규모, 위치, 설계 등을 하여야 하고, 또한 충분한 열람좌석을 구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ALS Regulations제 8조의 3은 이용자들이 안락한 환경에서 보다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이 설계되고 조직되어야 하며, 또한 충분한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보다 구체적으로 연구에 필요한 각종 기술을 활용하여 연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을 마련하고 또한 학생 수의 65%에 해당하는 열람좌석을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사한 법과대학 중에서 독립된 도서관 건물을 보유하고 있는 대학은 Harvard 법과대학 뿐이었고, 나머지 대학들은 법과대학 건물의 일부분을 도서관으로 사용하고 있다. 도서관 전용

35) Tanguay, 전제서, p. 21

공간의 크기와 열람석 수는 학생 수 및 교수 수 등 이용자 집단의 크기에 의하여 영향을 받겠지만, JD 학생 수를 중심으로 하여 비교할 때 법과대학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가장 커다란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대학은 Harvard 법과대학으로 전용공간이 198,640 square feet에 달하고 있지만 열람석 수는 761석에 불과하다. 따라서 JD 학생 총수 1650명으로 나누면 1석당 2.1명이 이용하게 된다. NYU 법과대학은 전용공간의 크기는 82,000 square feet로 Harvard 보다 훨씬 작지만 좌석 수는 897석으로 많다. JD 학생 수는 1200명이므로 1석당 1.3명이며, 따라서 그 확보율이 가장 높은 편이다. Columbia 법과대학은 68,408 square feet에 417석이며, JD 학생 수는 1100명이므로 1석 당 학생 수는 2.6명에 달해 가장 열람석 확보율이 낮은 편이다. Yale 법과대학은 64,340 square feet에 403석이며, JD 학생 수 555명으로 나누면 1석 당 1.4명으로 열람석 확보율은 높은 셈이다. 그리고 AALS Regulation에서 요구하고 있는 열람석을 확보하고 있는 법과대학은 JD 학생 수만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NYU 법과대학과 Yale 법과대학 뿐 이다.

#### 4) 도서관 장서

법과대학 도서관은 모체기관인 법과대학의 교육목적을 달성하고 이용자집단인 그 구성원의 요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도록 적합하고도 충분한 각종자료를 소장하여야 한다. 즉 도서관은 법학교육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깊이 있는 법학연구를 하기 위한 실험실이며 작업장이므로,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우수한 장서를 보유해야 한다. Tanguay는 법과대학 도서관의 장서가 이처럼 높은 수준을 유지해야 할 이유에 대해, 우선 학문자체의 특성과 법률문헌의 특성 및 법학교육의 성질 등을 첫 번째 이유로 지적하고, 둘째로는 법학분야의 출판물의 급증과 이에 대한 법률가들의 관심 고조, 셋째는 법학의 동태적 및 정태적 성질로 인한 최신자료 및 소급자료의 필요성, 넷째는 세분화된 전문분야에 관한 자료의 필요성 등을 이유로 밝히고 있다.<sup>36)</sup>

전술한 바와 같이, 법과대학 도서관이 보유하여야 할 최저장서에 관한 기준은 초창기부터 가장 큰 관심사였으며, 오늘날에도 장서와 관련된 내용이 기준에 있어서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초창기에는 주로 양적 기준 또는 필수 소장자료에 대하여 언급하였으나, 오늘날에는 도서관 장서에 관하여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

ABA 기준 제 606조 a에서, 법과대학 도서관의 장서는 학생들의 연구와 교과과목에 관한 요구를 만족시켜 주어야 하며 또한 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촉진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교수들의 교육, 연구, 봉사를 지원하는 장서를 구비하여야 하고, 또한 각 법과대학이 지닌 특수한 교육목적에 적합한 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장서도 갖추어야 한다고

36) 상계서, p. 16.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동조의 b에서는 핵심장서를, c에서는 추가장서를 구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d에서는 장서발전계획의 성문화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자료에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적합한 장비와 공간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보기술과 매체자료의 변화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오늘날에는 상술한 규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므로, ABA 자신이 이에 대한 공식적 해석을 하고 있다. 이 해석에서, 우선 장서란 인쇄자료, 마이크로 필름, 시청각자료, 전자형태의 자료 등을 모두 포함하며, 이용도가 높은 자료에 대한 복본 비치의 필요성이 있고, 핵심자료 이외의 정보원에 대해서는 공동이용을 할 수 있고 또한 이들에 대해서는 도서관 밖에 보관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핵심장서로서 연방법원 판결 집과 각 주의 상급법원 판결 집, 법령집, 계약 집, 의회자료, 이차자료 등을 예시하고 있다.

AALS Regulations 제 8조의 4와 5에서는 장서의 보관과 유지, 자료에 대한 접근 보장과 복본의 구비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AALS Bylaws 제 6조의 10, a는 ABA 기준과 유사한 내용의 기본 지침을 천명하고 있다.

각 법과대학의 장서현황과 수서 및 자료조직을 위한 정책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Yale 법과대학 도서관의 경우에 총 장서 수는 1,031,555권이고, 연간 증가 수는 34,580권이다. 연속간행물 종 수는 9,598종이며, microform 자료는 233,355건이다. CD Rom은 254,968 건인데, 그 중 34건은 네트워크로 접근할 수 있다. 자료의 선정을 위해 선정 지침이 있고, 실제로 선정은 전문분야별 사서가 담당한다. 1980년 이전의 사회과학 관련자료와 외국자료는 Hicks에 의해 정리되고, 나머지 자료는 LC 분류 표에 의하여 정리되며, Morris로 불리는 online 목록에 의하여 검색될 수 있다.

Harvard 법과대학 도서관의 총 장서 수는 1,997,313권이며, 연간 증가 수는 36,217권이다. 연속간행물 종 수는 14,978종이고, microform 자료는 277,224건이다. CD Rom은 759,986건인데 이들은 모두 stand-alone으로만 이용이 가능하다. 자료의 선정을 위하여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는 선정위원회가 결성되어 있어서 실제로 선정업무를 담당한다. 미국자료는 LC 분류 표에 의해 그리고 외국자료는 Moody 분류 표에 의하여 정리하며, Hollis라는 online 목록에 의하여 검색할 수 있다.

NYU의 법과대학 도서관의 총 장서 수는 997,463권이며 연간 증가 수는 22,419권이다. 연속간행물 종 수는 6,918종이고, microform 자료는 259,103건이다. CD Rom은 169,655건인데 이들은 모두 stand-alone으로만 이용이 가능하다. 자료의 선정은 분야별 전문가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자료는 LC에 의해 정리되며, Julius라는 목록에 의해 검색할 수 있다.

Columbia 법과대학 도서관의 총 장서 수는 99,3606권이고, 연간 증가 수는 15,851권이다. 연속간행물 종수는 7,140종이며, microform 자료는 204,787건이다. CD Rom은 343,793건이지만,

stand-alone으로 접근이 가능하다. 자료의 선정은 분야별 전문가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1979년까지의 자료에 대해서는 Hicks, 그리고 그 이후의 자료에 대해서는 LC (미국 법)와 Schiller (외국법)에 의하여 정리된다. 자료는 Pegasus 라는 online 목록에 의하여 검색할 수 있다.

이와 같이 4개 대학은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닌 대학들이어서 장서의 양이나 질에 있어서 매우 우수하며, 귀중본과 희귀본 등도 소장하고 있다.

## 5) 도서관장과 사서

법률사서직이 일반적인 사서직과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크게 인식된 것은 1906년 법률도서관협회를 설립한 때부터라고 할 수 있다. 그 이후 법률사서들은 법률도서관의 운영에 있어서 법률가와의 제휴를 선호하고, 법률문헌에의 접근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그리고 법률자료 내지 법학연구방법에 관한 교육자로서의 그들의 임무와 이용자에 대한 최대의 봉사를 강조하였으며, 그리고 도서관 운영면에서 실용성을 특히 강조하였다.<sup>37)</sup>

법률사서들은 이와 같은 특성을 계속 고수함으로써 미국 법률도서관의 변화에 커다란 영향을 미쳐왔다. 즉 법률서지 및 장서의 개발에 기여하고 법률정보에 대한 접근을 증대시켰으며, 법학연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또한 이용자에게 깊이 있는 참고봉사를 제공하게 되었다. 또한 법학 내지 법률전문직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짐으로써 법률분야의 변화를 재빨리 인식하게 되어 새로운 요구에도 적절하게 봉사를 하여 왔다. 그러나 법률전문직에 지나치게 의존한 나머지 일반도서관분야와 소원한 관계를 가짐으로써 도서관계의 흐름에서 멀어져 도서관분야에 새로 도입된 정보기술 내지 정리기술 등을 활용하지 못하였다.<sup>38)</sup>

법과대학 도서관이 그에게 부여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자격을 갖춘 직원이 필요하므로, AALS는 1938년 회원 법과대학에게 자격 있는 사서를 도서관에 반드시 두도록 규정을 만들었다. 1940년대 초에 나온 "The proposed interpretation"에서도 법률사서는 법률도서관업무에 관한 능력을 구비해야 하며, 최소 6 quarters이상의 법률훈련 혹은 1년 이상의 도서관훈련을 받은 사람으로서, 법률도서관에서 전임 직원으로서 2년 이상의 경험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고 언급되었다.<sup>39)</sup>

초창기 대부분의 법률사서들은 자기 자신을 "법률가 또는 보관관리자"로 보아 법률장서의 발전 및 그 보관에 주로 관심을 기울였고, "사서"로서의 인식은 미약하여 도서관학에 관한 훈련을 경시하였다.<sup>40)</sup> 그러나 오늘 날 전자형태의 연구용 및 교육용 도구가 교과과목의 운영에 활용됨에 따라 도서관 직원은 법률정보를 위한 전문가로서, 학생과 교수에게 기술의 활용에

37) Cohen (1982), 전계서, p. 193.

38) 상계서, 동면

39) Bade, 전계서, p. 48에서 재인용

40) Hazelton, 전계서, p. 319

대해 교육하는 “최전선의 교육자”의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sup>41)</sup> 이외에, 사서들은 법과대학에서 이용자의 질문에 대해 해답을 제공하거나 법률서지에 관해 배우고자 하는 학생과 교수들을 도와주며, 또한 자료이용법에 관한 교육을 하는 등 법과대학에서 실제적으로 교육기능을 수행하고 있다.<sup>42)</sup> 더욱이 법률사서는 많은 법과대학에서 공식적으로 개설된 강좌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고 있어서 이들에게 교수직위 (Faculty status)와 종신 재직권을 인정하고 또한 높은 수준의 대우를 받게 하며, 교수들과는 업무상 동료로서의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sup>43)</sup>

미국의 법과대학 중에서 최초로 전임 사서와 법률도서관장을 둔 대학은 Harvard 법과대학과 Yale 법과대학이었으며, 1880년대의 일이다.<sup>44)</sup> 일찍이 법률전문직단체들은 1930년대에 이미 법과대학 도서관장의 자격에 대해 기술하면서, 그들은 법학에 관한 훈련, 학자로서의 성향, 교육자로서의 자질, 전문직분야에 대한 기여능력 등을 지녀야 한다고 하였다.<sup>45)</sup> 그 후 1961년의 AALS Standard for Libraries는 전임 도서관장의 자격으로서, 법과대학 도서관의 운영에 관한 전문지식을 지닌 사람으로서 법학교육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1968년에는 이 기준을 개정, 도서관장에게 요구되는 교육자격을 강화하여 법학과 도서관학에 관한 교육을 모두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sup>46)</sup>

법률도서관에서의 연구는 목표 지향적 즉 법률문제의 해결을 필요로 한다. 그러므로 법률사서는 법률문제의 해결을 위해 정보를 추구하는 사람을 도와주므로, 따라서 사서의 교육과 경험, 및 연구기술은 법과대학 도서관의 가장 가치 있는 자산이다.<sup>47)</sup> 특히 법학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사서는 법률용어와 법학교육에 대해 잘 알고 있을 뿐 아니라 이용자의 관심과 이용자 자체에 대해 이해하고, 또한 법률자료의 특성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으므로 도서관이 실험실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높은 수준의 봉사를 할 수가 있다.

ABA와 AALS는 그 기준에서 법과대학 도서관장 및 직원의 자격을 엄격히 명시하고 있다. 먼저, 도서관장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우선 ABA 기준은 제603조에서 법과대학 도서관에 전임 관장을 두되, 그의 선발 유지는 법과대학에서 실시하며, 그는 법학과 도서관 정보학에 관한 이종학위와 행정 경험을 갖고 있어야 하며, 그에게는 법과대학 교수의 직위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ALS Bylaws 제 6조의 10, c는 도서관장이 교수단의 구성원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AALS Regulations 제 8조의 2, a는 도서관장에게 법학과 도서관 정보학에 관한 교육

41) Desiderio, 전계서, p. 295

42) Patrick E. Kehoe, AALL Newsletter, 1991년 6월

43) John B. Attanasio, "The Research Librarian in the Educational Mission of the Law School", Law Library Journal, Vol. 81, No. 1 (Winter 1989), p. 148.

44) Laura N. Gasaway, "Women as Directors of Academic Law Libraries", in Law Librarianship: Historical Perspectives (ed. by L. N. Gasaway), Fred B Rothman & Co., 1996, p. 497-500).

45) 상계서, p. 504.

46) 상계서, p. 506

47) Hotchkiss, 전계서, p. 9-10

이 요구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도서관 직원에 관한 규정으로서, ABA 기준 제 604조는 도서관 봉사를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도서관에는 충분한 수의 유능한 직원을 두도록 규정하고, 제 602조의 c는 학장과 도서관장이 협의하여 직원을 선발하고 관리하도록 규정하였다. 도서관 직원의 수는 교수 수와 학생 수, 연구 프로그램, 대학원 프로그램, 이중 학위 프로그램, 장서의 규모와 증가량, 봉사의 범위, 직원의 교육담당 정도, 컴퓨터 봉사에 관한 직원의 책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고 해석되고 있다 (해석 604-1). AALS Bylaws 제 6조의 10, c에는 법과대학의 프로그램을 위하여 높은 수준의 봉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전임직원을 두어야 하며, 이들에게는 훈련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BA와 AALS의 기준에 의하여 모든 법과대학의 도서관장은 법학과 도서관 정보학에 관한 이종학위를 반드시 보유하여야 하므로, 법과대학 도서관장이 이러한 자격을 구비하고 있어야 함은 물론이지만, 도서관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나 도서관장 외의 직원들 중에도 이종학위를 지니고 있는 사람이 상당 수 있다.

Yale 법과대학 도서관의 경우에 총 직원 수는 49명이고, 그 중에 사서직은 16명 (32.65%)이며 이들 가운데 법학과 도서관 정보학에 관한 이종학위를 가진 직원은 8명(16.33%)이다. Harvard 법과대학 도서관의 경우는 총 직원 수가 92명이고, 그 중에 사서직은 43명 (46.74%)이며 이들 가운데 이종학위의 보유자는 9명 (0.1%)이다. NYU 법과대학 도서관은 총 직원 수가 44명이고, 이중에 사서직이 14명 (31.82%)이며 이 중에 이종학위를 지닌 직원은 6명 (13.64%)이다. Columbia 법과대학 도서관의 경우 총 직원 수는 44명이고, 이중에 사서직이 15명 (34.09%)이며, 이종학위의 보유자는 10명 (22.73%)이다. 따라서 전체 직원 중에서 사서직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대학은 Harvard 법과대학 도서관이고, 이종학위를 보유한 법률사서의 확보율이 가장 높은 대학은 Columbia 법과대학 도서관이다.

법과대학 도서관에서 전문직으로 활동하는 사서의 자질과 그가 수행하는 교육기능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도서관에서는 이들에게 교수직위를 부여하고 있다. ABA와 AALS의 기준은 도서관장에게 교수직위가 부여되며 또한 교수단의 구성원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따라서 Columbia 법과대학의 도서관장을 제외한 나머지 법과대학에서는 이러한 기준에 따르고 있다. Columbia 법과대학의 경우에도 현재의 도서관장이 자격은 갖추고 있지만 오랫동안 직원으로 근무하다 도서관장으로 승진되었기 때문에 법과대학 내지 교수단에 의하여 선뜻 교수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특수한 상황 때문이라고 한다.

직원에 대한 교수직위의 부여에 관해서는 기준에 명시하고 있지 않지만, Yale 법과대학과 NYU 법과대학에서는 교수직위와 종신 재직권 등을 인정하여 현재 Yale에는 13명의 직원에게, 그리고 NYU에서는 8명에게 교수직위가 부여되어 있고, Harvard 법과대학과 Columbia

법과대학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 6) 기타 시설과 설비

새로운 과학기술의 발달은 법학의 교육 및 연구에 있어서 각종 기술을 활용하도록 요청하고 있으며, 따라서 연구와 교육을 지원하고 학습을 하는 장소인 법과대학 도서관은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ABA 기준 제 701에서, 법과대학은 현재 실시중이거나 가까운 장래에 실시할 예정인 법학 교육 프로그램을 위하여 적절한 시설과 기술장비를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도서관의 시설과 장비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 AALS Regulations와 Bylaws 역시 시설이나 장비에 관한 지침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법과대학들은 정보기술의 발달에 의하여 초래된 여러 가지 변화 즉 도서관의 자동화와 다양한 매체자료의 출현 및 이에 따른 검색방법의 개발, 그리고 컴퓨터의 활용을 통한 법학교육의 개발 등과 같은 현상에 대처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신속하고 정확하게 필요한 모든 법률정보를 입수하고자 하는 이용자의 요구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4개 법과대학이 모두 LAN으로 연결되어 있고, 이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컴퓨터가 도서관에 설치되어 있을 뿐 아니라 개인 소유의 notebook을 도서관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장치가 되어 있고, 나아가 Yale 법과대학의 경우에 도서관이 notebook을 보유하고 이를 2시간 동안 학생들에게 대출하여 주고 있다. 그리고 조사대상 법과대학 도서관들은 모두 이용자들의 편리한 자료복사를 위하여 각 자료실마다 복사기를 설치하였으며, 법률자료 가운데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microform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reader printer를 여러 대 (법과대학에 따라 다르나 모두 6-9대를 설치) 설치하고 있다.

또한 이들 도서관들은 정기간행물의 제본은 외부에 수주하지만, 도서관자료의 수리 제본 및 법과대학의 교육상 필요한 제본 등을 할 수 있도록 제본소를 둔 도서관도 있다. 4개 도서관들은 모두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고 따라서 귀중본과 기타 고서 등을 소장하고 있으며, Yale 법과대학의 경우에 이러한 귀중본과 고서 등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자료의 제본을 위한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또한 이를 위한 전문가를 두고 있다.

## 2. 도서관의 봉사

법과대학 도서관은 장서를 보존하여 이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며, 정보를 입수하고자 하는 이용자를 지원하고, 법률자료의 이용법 내지 법학연구방법에 관하여 이용자교육을 실시할 뿐

아니라, 도서관 자료 및 도서관봉사에 관한 홍보와 법학분야의 자료 및 연구방법에 관한 최신 발전상을 알려주는 것을 주된 활동으로 한다.<sup>48)</sup> 위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도서관장은 물론이고 도서관 직원 가운데 법학과 도서관 정보학에 관한 이중학위를 가진 법률사서가 미국의 법과대학 도서관에서 활발하게 봉사하고 있다. 즉 그들은 법학에 관한 지식 및 도서관 내지 도서관자료에 대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한 각종 봉사를 통하여 법학교육의 활성화에 기여할 뿐 아니라, 직접 개설된 교과목을 가르침으로써 도서관을 중심으로 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기여하고 있다.

도서관의 사서에게는 교육자로서의 역할과 연구자로서의 역할이 부과된다. 특히 사서는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추적하는 바로 그 현장에서 직접 이용자를 상대로 하여 봉사하기 때문에 교육기능을 수행하기에 매우 유리한 입장에 있다. 그러나 사서의 교육자로서의 역할은 교수들의 교육기능과는 성질상 다르다. 법과대학 도서관의 법률사서들은 법학과 도서관 정보학에 관한 지식을 배경으로 이용자들이 법률정보를 찾고 자료를 이용함으로써 법률연구에 관련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다. 그리고 교육의 일환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방대하고도 다양한 법률정보원에 접근하여 필요한 정보를 입수하는 방법에 대해 가르치고, 또한 연구교수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여 그들이 교수들의 연구를 지원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한다. 나아가서는 교수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sup>49)</sup>

이와 같이 사서는 법률자료와 법학연구방법에 관한 일차적 교육자이며 또한 지속적인 교육자로서의 임무를 법과대학에서 그리고 법률도서관에서 오랫동안 다양한 방법으로 수행해 왔다.<sup>50)</sup> 특히 학생들이 법률분야의 용어에 숙달하고 법학연구방법에 대해 터득하게 되는 것은 교수의 강의와 도서관 사서의 지원이 결합됨으로써 가능하게 되었다고<sup>51)</sup> 하여 사서의 역할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자로서의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법률사서는 법률분야의 동향, 법률관련 자료 및 이에 대한 접근, 그리고 법학교육에 대해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사서는 교육적 기능 이외에 연구적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오늘 날 법률분야를 둘러싼 환경은 법률정보의 폭발, 정보기술의 영향, 그리고 학제간 연구의 성행 등에 따라 법률정보를 효율적으로 다룰 전문가가 매우 필요하다. 이와 같은 봉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용자별로 그들의 요구에 대하여 파악하고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하며 또한 도서관의 여건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법률가들은 자기 스스로

48) Cohen (1982), 전계서, p. 195

49) Attanasio, 전계서, p. 146.

50) Cohen (1982), 전계서, p. 193

51) Hotchkiss, 전계서, p. 8

DB를 검색하여 필요한 정보를 입수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경우가 많다. 그 이유는 법률가들이 정보원으로서의 DB 자체에 대해 그리고 DB의 내용과 검색방법 등에 대해 잘 알지를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되고 있다.<sup>52)</sup> 이러한 특징을 지닌 이용자들이 연구에 필요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도록 사서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연구활동은 법과대학에서 교수들에 의하여만 수행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에 의해서도 이루어진다. 미국의 법과대학들은 교과과목에 의한 교육 이외에 법학잡지의 발행과 모의재판(moot court)의 참가 등이 법학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방법으로 인식하였고, 또한 다양하게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법률봉사가 또한 효과적이라고 인식하여 대중봉사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왔다. 이러한 다양한 활동을 할 때 학생들은 연구에 관련된 지원을 도서관에 요청하게 된다.<sup>53)</sup>

법과대학 도서관에 의하여 수행되어야 할 봉사에 대해서 ABA 기준은 비교적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즉 제 605조에서 도서관은 법과대학의 교육, 연구, 및 봉사 프로그램이 필요로 하는 요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참고봉사, 서지봉사와 기타 필요한 봉사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을 구체화하기 위한 해석 605-1에서 도서관 봉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예시하고 있다. 즉 적절한 참고봉사, 색인, 목록, 검색어 및 검색방법의 개발에 의해 도서관 장서나 기타 정보원에 대한 지적 접근을 제공, 상호대차나 기타 방법에 의한 문헌의 제공, 학생의 연구기술과 서지기술의 증대, 도서관 간행물의 제작, 기타 법과대학의 사명을 달성할 수 있는 봉사의 제공 등이 적절한 봉사에 해당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한편, AALS에 의한 규정 중 Bylaws에는 봉사에 관련된 규정이 전혀 없고, Regulation 제 8조의 1, b에서 도서관이 개관되어 이용되는 기간 동안에는 1명 이상의 전문직 사서가 상주하여 봉사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사항만 규정할 뿐 구체적인 봉사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 4개 법과대학은 이러한 규정에 따라 그 도서관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봉사를 각각 실시하고 있는데, 특기할 사항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Yale 법과대학 도서관은 법률사서에 의해 참고봉사를 실시하고, 도서관 이용안내자료를 발간하여 학생들에게 배포함으로써 도서관이용에 도움을 준다. 그리고 법과대학 소장자료에 관한 목록인 MORRIS의 이용과 기타 DB의 이용, 법학연구에 관한 질문, 연구전략에 관한 질문에 응하여 이용자들이 필요로 하는 법률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이밖에도 법학연구방법에 관한 교육을 가끔 실시하며, 법률관련 DB (Lexis, WESTLAW)의 이용에 관한 강좌가 회사에 의하여 실시될 수 있도록 협력을 한다. 그리고 교수들에 대한 봉사를 담당하는 법률사서들은 교수들의 연구활동을 직접 지원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담당하고 있는 강좌에 참여

52) Attanasio, 전계서, p. 150.

53) Wegner, 전계서, p. 255.

하여 그 분야의 연구자료에 관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교수들의 교육을 지원해준다. 특히 외국법과 국제법, 비교법 등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참고봉사를 실시하고 있다. 법학연구방법에 관한 강좌는 법과대학 도서관에서 연중 계속 실시함으로써 법과대학의 구성원이 이에 관한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있다.

Harvard 법과대학 도서관에는 참고봉사를 위한 참고 데스크가 세 개 설치되어 있다. 즉 영미법, 국제법, 특수장서 등으로 나뉘어 학생이나 교수가 원하는 자료를 찾도록 도와주고, 연구 프로젝트에 착수할 때 도움을 주며, 이용자 스스로 해답을 찾기 어려운 질문에 대해 도움을 준다. 그리고 on-line 자료 즉 Hollis, Lexis, Westlaw 뿐 아니라 각종 색인자료, 인터넷의 이용방법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또한 이용지원을 한다. 이 도서관에서는 교수의 정보요구와 도서관에 대한 요구를 파악하고 그들에게 적절한 봉사를 제공하기 위하여 xmarquf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즉 교수들이 도서관에 관하여 의문이나 요구가 있을 때 직접 접촉할 수 있는 사서를 연락 책으로 지정하는 liaison program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에 의해서 도서관은 최신정보주지, SDI 봉사제공, 정보전달에 관한 지원을 하며, 경우에 따라 그들이 필요로 하는 서지를 작성하여 주기도 한다.

NYU 법과대학도 Harvard 법과대학과 마찬가지로 교수 개개인이 도서관과 직접 접촉할 수 있도록 faculty liaison program을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용자에 대한 교육기능이 도서관의 기본적인 역할이라는 것을 인식하고서, 각 학기마다 학생들에게 도서관 소장자료 기타 전자형태자료의 이용에 관한 강좌를 실시한다. 즉 법과대학도서관 목록 (Julius)과 중앙도서관 목록의 이용, 법학분야의 기본적인 정기간행물 기사색인의 이용법, Westlaw와 Lexis를 위시한 각종 DB의 이용법, 그리고 외국법, 비교법, 국제법 등에 관한 자료의 이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Columbia 법과대학 도서관에서는 도서관이 이용교육을 직접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online Database의 이용에 관한 강좌가 회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도록 협조를 할 뿐이며, multi-media, web 등에 관한 교육도 법과대학의 한 부서인 Instructional Services Department가 담당하고 있다.

법과대학 도서관이 법학교육에 없어서는 안될 실험실과 같은 성질을 지니므로, 따라서 교과과정 속에 도서관 및 자료의 이용에 관한 강좌가 포함되어야 함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하겠다. ABA 기준 제 301조는 법과대학의 교육목적이 졸업 후 법조인으로 진출하여 법률전문직으로서 효과적으로 활동하고, 현재적 및 잠재적 법률문제를 처리를 위한 자질을 갖도록 훈련시키는데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제 302조에서는 법학연구와 문제해결에 필요한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법과대학에는 이에 관한 강좌가 개설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ALS Regulations 제 6조의 9, d 는 좀더 구체적으로 법과대학에 "Legal Writing and Research"라는



강좌를 개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강좌명에는 차이가 있지만 4개 대학이 모두 이를 개설하고 있다.

Yale 법과대학에서는 “Advanced Legal Research”라는 강좌가 개설되어 도서관장과 1인의 참고사서가 강의를 담당하고 있다. Harvard 법과대학에는 “Legal Research”라는 강좌가 설치되어 있고 교수가 이를 담당하며, 참고사서가 이를 지원해준다. NYU 법과대학은 “Lawyering”이라는 명칭으로 강좌가 개설되어 있고 교수들에 의하여 강의가 이루어지는데, 1명의 사서가 이에 참여하고 있다. Columbia 법과대학에서는 “Legal Writing”이라는 강좌가 개설되어 있으며, 이 강좌는 신참 교수들로 구성된 교수진이 담당하고 도서관은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

조사대상 법과대학의 도서관들은 많은 장서를 기초로 전문적인 법률사서들에 의한 봉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이용자들의 요구에 완전히 대응할 수 없으므로, 다른 도서관들과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consortium을 결성하여 이에 참가하는 도서관이 자원의 공동 활용, 도서관봉사에 대한 상호 접근, 장서개발을 위한 협동 및 기타 협동적 활동을 참가도서관 간에 공동으로 수행한다. 그리고 회원 도서관에 소속된 교수나 학생들에게 원 자료를 대출하거나 복사자료를 제공하고, microform으로 제작 또는 e-mail 전송에 의해 자료를 제공한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또는 전화나 e-mail 등에 의해 참고봉사를 행한다.

현재 Yale 법과대학은 3개, Harvard 법과대학은 4개, NYU 법과대학은 4개, 그리고 Columbia 법과대학은 5개의 consortium에 참가하여 활동하고 있다. 4개의 법과대학이 모두 회원으로 참가하고 있는 consortium은 NELLCO이다. NELLCO (New England Law Library Consortium)는 1983년 New England에 소재한 법률도서관들이 협동적 장서개발과 자원의 공동활용을 통해 연구와 교육의 기회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결성된 것으로, 회원 도서관간에 상호 혜택을 줄 수 있는 장치로서 활발하게 작용하고 있다.

특히 NYU의 법과대학 도서관은 법학교육의 세계화라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Information Transfer Network (IYN)을 구축하여 교수와 학생들에게 전 세계의 법률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IV. 요약 및 제언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법조개혁 내지 법학개혁의 취지는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모든 국민에

게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양질의 서비스는 충분한 자질을 갖춘 법률가에 의해 주어질 수 있으므로, 이러한 능력있는 법률가를 배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때 능력 있는 법률가란 급변하는 사회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법률문제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전문가를 말한다.

법률가들은 법률문제의 해결방안을 주로 각종 기록자료에서 찾으므로, 기록자료의 보고인 도서관에서 필요한 정보를 찾아 활용하는 기술이 법률가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소양이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도서관은 법과대학에서 가장 중추적인 시설인데, 특히 법률영역의 확대, 임상교육의 필요성 증대, 정보기술의 발전, 학제간 연구의 증가현상, 학습개념의 변화 즉 teaching보다는 learning이 점점 강조되고 있는 현실에서는 도서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할 수 밖에 없게 된다.

법학교육개혁안으로서 미국식 law school 제도인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를 주장하고 있는 새교육공동체위원회는, 그 보고서에서 법과대학 도서관을 설치하여 인적, 물적 시설과 장서를 갖추도록 제안하였으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그런데, 미국 law school에 대해 직접 통제를 하는 법률전문직단체 (ABA, AALS)들은 법과대학의 기준과 규정에 대해 명문화하고 있으며, 그 일부로서 법과대학 도서관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즉 ABA 기준, AALS 규정과 세칙 등이 모두 법과대학에 반드시 도서관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도서관과 법과대학과의 관계, 도서관의 조직과 재정 등 운영에 관한 기본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도서관의 인적 자원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도서관장의 지위와 자격 및 직원의 임용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도서관 장서, 도서관의 기본시설과 좌석 등 도서관이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제반요소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본요소를 기반으로 도서관이 수행해야 할 봉사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다. 아울러 도서관의 적극적 활용에 의해 법학연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에 관한 강좌가 법과대학 교과과목으로 개설되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법과대학 도서관이 법학교육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법학교육을 위한 실험실로서의 위치를 확립한 미국의 도서관기준 내지 규정에 대해 조사하여, 우리나라에 미국식 law school제도가 도입될 때 법과대학 도서관의 기준을 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상의 내용에 대해 소개하였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4개 명문 법과대학의 도서관 운영에 관한 현황을 실제로 조사하여 이러한 기준과 규정 등이 실제로 어느 정도 충족되고 있는가를 살펴봄으로서 보다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얻는데 참고가 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법학교육에 적합한 기준을 어떤 내용으로 설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연구해야 할 과제로 남겨둔다. 본 논문에서는 다만 앞으로 미국식 law school 제도가 우리나라의 법학교육제도로 도입이 되어, 법과대학 학생과 교수 그리고 기타 법률가들에게

법학연구와 교육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준을 정할 때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그 기본 방향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 1. 도서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1960년대에 법학교육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사항 즉 교과서와 법전 위주로 교수와 학습이 이루어지고, 도서관의 이용도 다만 도서관 좌석을 이용하는데 지나지 않는다는 점<sup>54)</sup>이 30여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그대로 지속되고 있다. 도서관이 법학교육의 활성화와 내실화를 위한 중추적 기관으로 작용하려면 법과대학의 3요소 즉 학장, 교수, 도서관장이 도서관의 중요성을 알고 이의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해야 한다. 특히 법과대학의 행정적 책임을 지고 있는 학장이 도서관의 중요성에 대해 절실하게 느껴 도서관이 양적, 질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교수들은 도서관을 중심으로 학생들이 학습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특히 교과과목의 교육에서도 도서관 자료의 활용이 습관화되도록 지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 2. 법과대학 도서관의 기준 설정의 주체

미국의 ABA, AALS 등과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법률가들로 구성된 권위 있는 전문직단체들이 법학교육에 대한 관심을 갖고 그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법학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도서관이 중요하다라는 점을 인식하고서 법과대학 도서관의 설치, 도서관이 갖추어야 할 기본요소와 봉사의 내용에 대해 규정하고, 이의 준수를 요구하며, 나아가서는 법과대학에 대한 평가를 할 때 도서관에 대한 평가를 비중있게 다루는 것이 중요하다. 새교육 공동체위원회에서는 교육부 산하에 법학교육위원회를 설치하여 기준의 설정과 심사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자는 건의를 하였는데, 법률가의 교육과 양성은 법률전문직의 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므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법률전문직단체에서 이를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 3. 법과대학 도서관의 설치와 봉사에 필요한 제반 여건의 확보

우리나라의 법과대학 중에서 법률도서관을 두고 있는 대학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뿐이다. 그러므로 모든 법학교육기관이 교육에 필요한 충분한 여건을 갖춘 도서관을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그리고 도서관이 실험실로서 작용하려면, 교육자와 피교육자가 법학

54) Jay Murphy, *Legal Education in a Developing Nation: The Korea Experience*, Korea Law Research Institute: Seoul National University, 1967, p. 134

의 연구와 교육을 하는데 필요한 제반 물적 여건을 갖추어야 하므로, 우리나라의 법학교육을 위하여 도서관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열람석, 다양한 형태의 자료, 각종 장비와 기기 등에 관한 기준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도서관이 중추적 기관으로서 활동하기 위해 수행해야 할 봉사 역시 이 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이용자에 대한 봉사의 질은 실제로 봉사를 담당하는 직원이 충분한 자질을 갖추고 있는가 그리고 충분한 수의 직원이 확보되어 있는가에 달려있다고 하겠으므로 이에 관한 내용도 기준에서 명시해야 할 것이다.

#### 4. 법률사서제도의 도입

전문화시대에는 이용자에게 전문적인 봉사를 할 수 있는 주제전문사서가 필요하다. 현행 교육제도 하에서도 부전공, 복수전공, 대학원과정 등을 통해 법학과 도서관학(문헌정보학) 두 학문에 대한 교육을 받아 법학에 관한 주제배경을 갖춘 사서가 배출될 수는 있다. 그러나 법률사서로서 활동을 하려면 법률도서관학에 관한 기본지식도 구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만약 법학대학원제도가 채택되더라도 대부분의 대학에 있는 법학과는 학부과정으로 그대로 남게 되므로, 복수전공제도와 연계하여 법률사서의 양성방안에 대해 연구하는 것도 의미 있는 과제라고 본다.

#### 5. 법학연구 강좌의 개설

미국의 AALS 규정은 모든 법과대학이 Legal Writing and Research라는 강좌를 개설하여 학생들이 반드시 이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는 법과대학 학생으로서 부과된 학습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뿐 아니라, 졸업 후에 법률가로서 활동할 때에도 매우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다양한 형태의 정보자료가 쏟아져 나오고, 정보기술의 활용이 요청되며, 학제간 연구가 활발하게 나타나는 현실에서 필요한 정보를 입수하여 업무에 활용하려면 이러한 강좌를 통해 법과대학 도서관의 효율적 활용방법에 관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 중요하다.

### 참 고 문 헌

사법개혁추진위원회, 법조인 양성제도, 1999, 86p  
새교육공동체위원회, 법학교육제도 개선연구: 학사 후 법학교육의 도입, 1999, 171p.  
한국대학교육협의회, 1999년도 대학 학문분야 평가 인정제 시행을 위한 법학분야 평가 편람, 1999, 51p

- AALS, Bylaws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Law Schools, Inc., 1997
- AALS, Executive Committee Regulations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Law Schools, 1997
- ABA, The American Bar Association's Role in the Law School Accreditation Process, 1997
- ABA, The Standards for Approval of Law Schools of the American Bar Association, 1996
- Attanasio, John B., "The Research Librarian in the Educational Mission of the Law School",  
Law Library Journal, Vol. 81, No. 1 (Winter 1989), pp. 143-151
- Bade, E. S. " Quo Vadimus? ", Journal of Legal Education, vol. 2 (1949), PP.41-52
- Badertscher, David "Standards for Law Libraries and Law Library Service" Bookmark, No.  
48 (Summer, 1990), pp. 282-286
- Cohen, Morris L., How to Find the Law, 7th ed., 1976, West Publishing Co., 542p
- Cohen, Morris L. "Tradition and Change in Law Library Goals", Law Library Journal, vol.  
75, 1982, pp.192-197
- Desiderio, Robert J., "The law school library; its function, structure, and management" in  
Special Libraries, October 1982, pp. 292-297
- Dragich, Martha J. "Organizational Structure in Law Libraries; a Critique and Models for  
Change", Law Library Journal, Vol. 81, No. 1 (Winter, 1989), pp. 69 - 96
- Gasaway, Laura N. "Women as Directors of Academic Law Libraries", in Law  
Librarianship : Historical Perspectives (ed. by Laura N. Gasaway and Michael G.  
Chiorazzi), Fred B. Rothman & Co. 1996 , pp.497-553
- Giblin, Robert, "Changes and Challenges: Law School, the New Legal Education and the  
Law Library", Law Library Journal, vol.73, No.3 (Summer 1980) pp. 693-701
- "The Harvard Law School", Law Quarterly Review, vol. 3 (1887), pp. 118-125
- Hazelton, Penny A. "Law Libraries as Special Libraries: an Educational Model", Library  
Trends, Vol. 42. No. 2 (Fall 1993), pp. 319-341
- Hotchkiss, Mary A. "The Role of Law Librarians in Legal Education and the Legal  
Profession", Profile, No. 2 (Winter 1992), pp. 8-12
- Kehoe, Patrick, AALL Newsletter, 1991, 6
- Lee, Robert "From the Classroom to the Library and from the Library to the Workstation;  
Redefining Roles on Legal Education" The Law Librarian, 30.1, March 1999, pp.  
37-41
- Mullins, J. L. A Study of Selected Factors Affecting Growth Rates in American Law  
School Libraries, 1932-1976, Ph.D Dissertation, Indiana University, School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June 1984, 89p

Pulling, Arthur C. "The Harvard Law School Library", Law Library Journal, Vol. 43, No. 1 (February, 1950), pp. 1-11

Richman, H. and Windsor, S. "Faculty Services: Librarian-supervised Students as Research Assistants in the Law Library", Law Library Journal, Vol. 91. No. 2, (Spring 1999), pp.279-290

Slinger, Michael J. "Opening a Window of Opportunity; The Library Staff as a Meaningful and Integrated Part of the Law School Community", Law Library Journal, No.4 (Fall, 1991), pp. 685-704

Tanguay, Guy, "The Case for the Special Status of the University Library" Law Library Journal, Vol. 66 (1973), pp. 12-33

Wegner, Judith Welch, "Legal Education in the Future", in The National Conference on Legal Information Issues: Selected Essays (ed. by Timothy L. Coggins), Fred B. Rothman & Co., 1996, pp. 249-258

Young, Heartsill (ed.), ALA Glossary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ALA: Chicago, 1983, 245p